

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선임·해임 신고서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3일
신고인	성명	생년월일	
	주소	전화번호	
업소명		영업신고번호 제 호	
소재지			

맞춤형 건강기능 식품 관리사	선임	성명	
		생년월일	
		자격	
		일자	
	해임	성명	
		생년월일	
		자격	
		일자	

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의3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선임(해임)을 신고합니다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

첨부서류	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조의2 각 호에 따른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(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로 선임된 경력이 없는 사람을 선임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선임 안내

1.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 - 가. 「의료법」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·치과의사·한의사·간호사
 - 나. 「약사법」 제2조에 따른 약사·한약사
 - 다. 「국민영양관리법」 제15조에 따른 영양사
2.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선임하지 않은 영업자에 대하여는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행정처분과 같은 법 제45조제4호의2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.
3.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선임·해임신고를 하지 않은 영업자에 대하여는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47조제5호의 3에 따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.

처리절차

